

December 30,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67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0. 12. 18 ~ 12. 24.) -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2020. 12. 18. 금융위원회는 무자본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테마주 감시 강화(65개 종목 추가 지정, 총 162개 종목 감시중), ② 연말 윈도우드레싱 시세조종, 영업실적 단기 급변 기업 집중감시중, ③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조사 진행중, ④ 집중신고기간(20.10월~21.3월) 중 접수된 412건 검토중 등. 한편, 제도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금융위), ②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금융위, 금감원), ③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방지(금감원) 등이 있음

[참고자료]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 보도자료



[금융위2]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

2020. 12. 21.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전자),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후자)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전자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② 일정 유동성 수준 도달시 주식시장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시장조성자 졸업제”), ③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 전면 적용, ④ 시장조성 제도운영 현황 및 거래내역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이 있으며, 후자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거래소(시감위) 내 공매도 거래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조직 구축, ②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6개월→1개월) 및 새로운 적발기법 개발, ③ 시장조성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지속 등이 있음

[참고자료]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참고자료]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



[금감원] ‘회사 유형별’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2020. 12. 22. 금융감독원은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회사 유형별로 맞춤형 유의사항을 안내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권상장회사) 등록 회계법인(現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함, ② (비상장 대형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함, ③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 선임, ④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 선임, ⑤ (유한회사) 비상장 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 상이 등이 있음

[참고자료] 회사 유형별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중기부] 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2020. 12. 21.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조 7,229억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유망분야 중점 지원, ②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③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연계 지원, ④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평가 공정성 제고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공정위]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 12. 22. 단체구성권·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대리점의 협상력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공정위는 연내 국회 제출 계획을 밝힘)

<대리점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개정방향	개정내용
대리점 협상력 제고	①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안 제11조의2 및 제12조)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②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안 제34조) ③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법위반 예방	④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⑤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⑥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4)

[참고자료]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기부1] 바이오 핵심 원천기술개발 분야 '21년 5,200억원 투자

2020. 12.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1년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상확대)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 추가, ② (인정요건)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 완화, ③ (협력형유턴)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규정 및 우선·추가지원 근거 신설, ④ (지원강화)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 마련, ⑤ (사후관리)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 강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바이오 핵심 원천기술개발 분야 '21년 5,200억원 투자



[과기부2]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제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 개념 정의, 산업별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거래·유통·활용 기반 조성, ②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③ 인공지능 법인격 및 책임체계 정립을 위한 장기 과제 추진, ④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윤리 정립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조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발표



[참고자료]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논의

2020. 12.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 ② 데이터 3법 개정 시 단순 편입된 정보통신서비스 특례를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하여 기업 등의 혼란과 이중부담 해소, ③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④ 신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입법상의 미비점 정비 등이 있음

[참고자료]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으로 선도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산자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2. 현행 디자인보호법에도 개정 전 특허법과 유사한 방식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디자인권자 및 그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일한 취지

[산자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수요를 일부 반영하여 국내복귀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게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국내복귀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복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기재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2.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와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재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2.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 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 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하고,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 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를 신설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입법(행정)예고 법안

[환경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2020. 12. 21. 환경부는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장조성자를 신규지정 가능하도록 행정 예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장조성자 최초지정연도 관련 조문 명확화 (안 제3조제1·3·4항), ②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중 배출권 거래업무기간 삭제, ③ 시장조성자 평가기준 개선 등이 있음

[금융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는 2020. 12. 24.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함

> 법률 발의안

[한노위]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등28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층적 기후위기대응 계획의 수립·시행을 추진하고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매년 이행실적의 평가·점검과 국회보고 등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제도를 마련·운영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국토위]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산자위]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태호의원등10인)」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온라인 유통 환경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국경을 초월한 유통이나 온라인 플랫폼과 결제시스템 도입 등 중소기업에게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유통시스템의 구축, 온라인 진출,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금융지원,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산자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1주마다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며,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안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등10인)」

국가가 재난 대응조치로 상가건물의 영업중지 또는 영업제한을 명령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인도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나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 혜택과 함께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의 공제 혜택을 주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춰주려는 것임

[정무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등10인)」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중 일부를 삭제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며,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등10인)」

신탁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상의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신탁업자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체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거나 스스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문체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개선·보완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 간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여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방위]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디지털라이프의 확대로 데이터에 기초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 및 기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활동 산물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데이터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데이터 주체의 주권적 권리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는 근간이 되게 하려는 것임

[법사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 · 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서예지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